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6. 28 선고 2023가단255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6. 2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6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와 2019. 7. 10. 접수 제73806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411593호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여 'C은 원고에게 20,394,841원 및 그 중 18,289,382원에 대하여 2020. 10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. 12. 30. 확정되었다. 그런데 C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19. 7. 10. 접수 제738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그러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김진혜

별 지 목 록

1 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동

[도로명주소]

경기도 남양주시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
면 적 : 84.974 m²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경기도 남양주시 대 45170.2 m²

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 45170.2 분의 54.1134

- 이 상 -

